

1. 의결주문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개정·삭제하고자 함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별지서식 등 관련 조항

3.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근거 규정 변경(안 제16조 제2항)

-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등(현행 제21조, 제24조, 제

24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3호의3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 삭제)

-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및 별시서식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기 반영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생 략)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 사방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다만, <u>법 제31조제1항에 따른</u> <u>수질개선부담금</u>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않 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 에게는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지하수법」 제30조의3제 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 상 제외신청)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 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 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 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 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삭 제>

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
 - 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 · 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제23조(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삭 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샘플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플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삭 제>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이의신청 등) ① 법 제

<삭 제>

3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질개
선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
로 한다.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
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
개선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
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
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
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
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
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
적의 제출) 시·도지사는 수질
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
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삭 제>

<삭 제>

<u>야 한다.</u> <u>1. 삭제</u> <u>2. 삭제</u> <u>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u> <u>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u> <u>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u> <u>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u> <u>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u> <u>·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u> <u>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 <u>1. 삭제</u> <u>2. 삭제</u>	<u><삭 제></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79